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정춘생 · 차규근
이해민 · 강경숙 · 김준형
신장식 · 서왕진 · 김선민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·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·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,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·요구 및 보존·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,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찰총장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총장,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,”으로, ““검찰총장등””을 ““중대범죄수사청장등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8항 및 제12항 중 “검찰총장등”을 각각 “중대범죄수사청장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)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·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,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,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, 관세범칙사건 조사, 관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,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「정치자금법」 위반사건의 조사,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(이하 “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”이라 한다)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(이하 “특정금융거래정보”라 한다)를 <u>검찰총장</u> , 행정안전부장관(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국세청장, 관세청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금융위원회	제10조(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 중대범죄수사청장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삭 제

④ 검찰총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행정안전부장관, 국세청장, 관세청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금융위원회, 국가정보원장(이하 “검찰총장등”이라 한다)은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
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
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
다.

1. ~ 4. (생략)

⑥ · ⑦ (생략)

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
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, 금융정
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

_____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④ 중대범죄수사청장, -----

“중대범죄수사청장등”-----

⑤ 중대범죄수사청장등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⑧ _____

보를 <u>검찰총장등</u>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. ⑨ ~ ⑪ (생략) ⑫ <u>검찰총장등</u>은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존·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--- <u>중대범죄수사청장등</u>----- ----- -----. ⑨ ~ ⑪ (현행과 같음) ⑫ <u>중대범죄수사청장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